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7호로 2022년 10월 21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관내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점용도로가 보호구역으로 포함된 경우 추가 보완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반영하고, 「도로법」 개정사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불이익에 대한 처분을 고발조치에서 과태료 부과로 경감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점유하는 도로공사 시 통행로 확보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 요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고발조치
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 (안 제11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 10. 18. ~ 10. 24. / 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으로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추가적인
안전대책 요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에서는 도로점용공사 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시행자가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 시 조치사항을 「도로법」 제99조 제2호를 적용한 고발조치에서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개정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행로의 안전시설 확보 등의 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추가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도로법

제14조(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지정·고시한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2. 특별시·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8조(구도의 지정·고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고시한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⑥ (생략)

2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1~3 [생략]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시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